



“CM은 선택이 아닙니다.”
한 국 CM 협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CM담당 본부장

제 목 :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권 실태조사 및 해당 제도개선 의견 제출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설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에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기지연에 대한 우려, 공사중지에 대한 책임소재 등의 사유로 **해당 공사중지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아**,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귀사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권이 행사되지 않는 사유, 해당 제도의 개선사항 등에 관해 의견이 있다면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오는

5. 2(수)까지 정책사업본부 박현석 대리(phs4784@cmak.or.kr)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권 제도개선 의견 수렴. 끝.

한국CM협회장



대리 박 현 석

차장 김 강 욱

시행 정책사업본부 - 70 (2018. 4.24)

우 137-84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방배동 938-7, 유니온빌딩 4층)

전화 02-585-4713

전송 02-585-2689

<http://www.cmak.or.kr>

phs4784@cmak.or.kr